대한육상연맹 정관세칙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정관 제14조 제2항 3호에 의거, 본 연맹의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규정한다

제2장 상임이사회

제2조 (구성 및 기능)

① 상임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전무이사 및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보직이사 중 담당을 증감 또는 변경할 수 있다.

② 상임이사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승인된 사업계획의 집행
2.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
3.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명시된 사항을 제외한 제반업무
4. 각 규정에 속한 내규 및 세부 지침의 제정, 개정 및 집행업무
5. 총회 및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의 심의
6. 각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및 보고된 의결사항의 처리
7. 지도자 해외파견 심의 및 그에 관한 업무처리
8. 기타 긴급을 요하는 업무 및 회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사항의 집행 처리

③ 상임이사회 소집절차 및 의사운영은 이사회에 준하여 다음과 같다.

1. 상임이사회는 전무이사가 회장의 재가를 득한 후 소집한다.
2. 상임이사회는 전무이사가 긴급 및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보직이사 과반수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의 재가를 득한 후 소집할 수 있다
3. 상임이사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4. 상임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.

제3조 (이사회와의 관계)상임이사회의 결정사항은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.

제3장 임원 및 회의

제4조 (자문기관)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.

1. 고 문 : 약간인
2. 명예회장 : 1인(전 회장)

제5조 (고문 및 명예회장)
① 고문 및 명예회장은 본 연맹의 최고 자문역 위촉임원이다.
② 고문임원 운영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

제6조 (자문위원)
① 고문은 육상경기계의 공로자. 원로급 및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이를 위촉할 수 있다.

② 자문은 본 연맹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문에 응한다.

제7조 (회의진행)
① 회장은 정관 제3장 및 제4장 에 정한 회의 외에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세칙 제3장에 정한 각 자문기관과 이사와의 연석회의 또는 개별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② 사무처장 및 기타 부서장은 이사회, 대의원총회 및 기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8조 (각종위원회)
① 정관 제7장에 정한 각종위원회(이하, 위원회라 약칭한다)에 상벌(스포츠공정), 경기, 경기력향상, 시설, 신인발굴, 지도자교육, 여성위원회, 생활체육위원회를 둔다
② 필요시 스포츠과학, 의무, 국제, 선수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,
②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 및 간사로 구성한다.
③ 위원장은 가급적 이사로 위촉하고 간사는 사무처의 담당직원으로 한다.
④ 위원장은 회장이 이를 위촉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이를 위촉 및 임명한다.
⑤ 각종위원회는 소관 전문사항에 관한 회무를 처리한다.

제9조 (위원회의)
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유고 시 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.
②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의안작성, 회의록 작성보관, 회무 보고 및 기타 회무를 수행한다.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④ 의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과 회의결과를 사무처의 소정절차를 거쳐 회장

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회장의 재가를 득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

제10조(특별규정)
① 위원회 특별규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따로 이를 정한다.

제11조 (임기)
① 위촉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
②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
③ 보궐 위촉임원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2조 (위촉임원의 해임)
① 대상 : 고문 및 명예회장, 각종위원회위원, 심판임원
② 조건
1. 정관 제 5장 제26조 에 해당하는 자
2. 임기가 만료 된 자
3. 해당 위원장 교체임명에 따른 위원회 재구성 시
단, 최고의 결정권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

제4장 육상경기대회 및 참가자격

제13조(경기대회 요건) 본 연맹이 공인하는 육상경기대회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
1.본 연맹 경기규칙에 준하여야 한다.
2.본 연맹 공인경기장에서 개최하여야 한다.
3.심판원은, 보조원을 제외하고 반드시 공인심판원 이어야 한다.

제14조 (경기대회 임원)전조의 경기대회에 대한 임원은, 그 경기 대회전에 본 연맹 경기규칙 및 그 경기대회의 준비 위원회 요강에 의하여 위촉한다.

제15조 (경기대회 참가자격) 본 연맹이 공인하는 경기대회에는,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참가를 인정하지 않는다.
1. 등록선수가 아닌 자
2. 대한육상연맹 선수등록 규정의 참가자격에 저촉되는 자
3. 본 연맹 또는 산하경기단체의 자격심사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경기대회 참가가 금지되어 있는 자

제16조 (국제경기대회 개최)

① 국내에서 국제육상경기대회를 개최하고자 할 시에는 본 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친선경기대회의 개최도 동일하다.

② 외국인 선수의 국내경기 참가에 따른 교섭은 본 연맹 협의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국제대회라 함은 자국을 제외한 2개국 이상이 참가하여야 한다

④ 참가인원은 로드레이스 및 트랙 필드 단일종목별 대회는 종목별 3명 이상 참가하여야 한다

제17조(국제경기대회의 참가허가) 등록선수가 외국의 경기대회에 참가할 때는, 소속 경기단체를 통하여 본 연맹의 참가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 단, 국제육상경기연맹에 가맹된 그 나라의 통할단체가 승인한 경기대회가 아니면 본 연맹은 그 경기대회의 참가허가증을 발행하지 않는다.

제18조 (선수등록규정)국내 및 국외 선수 등록규정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

제19조 (공인심판)국내에서 개최되는 대회공인심판원규정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

제20조 (경기장 및 용기구 규칙)국내에서 개최되는 경기대회경기장 및 용기구 규칙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

제21조(임원의 수당) 본 연맹 비상근 집행부 임원 및 위촉 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집행부임원 특별활동비와 위원회 위원의 회의수당을 연맹 대표자의 결정으로 자체수입 재원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세칙은 이사회 승인일(2016.10.06.)부터 시행한다.